

『서울대학교 法學』 편집위원회 규정

1994. 11. 23. 제정
2006. 2. 28. 전문 개정
2007. 12. 8. 개정
2016. 4. 18. 개정
2016. 10. 31. 개정
2017. 10. 30. 개정
2019. 3. 28.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Seoul Law Journal)』(이하 법학지라 한다)의 학문적 질과 이론적 수준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하게 우수한 전문논문집으로서의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고,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편집위원장은 교수인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학연구소장이 위촉·임명한다.
- ④ 법학연구소의 간행부장 및 연구부장은 그 임기 동안 편집위원을 겸한다. 간행부장인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6. 4. 18. 개정>
- ⑤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겸임연구원, 공인된 국내외의 대학의 법학전임교수 또는 법률분야 전문 종사자 중에서 선임된다.
- ⑥ 편집위원의 명단과 소속은 법학지 속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⑦ 법학연구소장은 편집위원으로의 위촉이 예정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가 발행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4. 게재된 논문의 사후 수정 또는 게재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일

<2019. 3. 28. 개정>

제4조 (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분기당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소집하되, 법학연구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편집부위원장, 법학연구소장이 지명하는 편집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016. 10. 31. 본항 개정, 2017. 10. 30. 단서 신설>

제5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 ① 각 편집위원들은 연구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 (편집실무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편집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편집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편집실무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편집

위원장은 편집실무위원을 겸한다. <2016. 4. 18. 개정>

제8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